

가스용품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제40조관련)

1. 가스용품의 검사기준

가스용품의 검사는 별표 6 제2호의 가스용품제조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가. 설계단계검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6 제2호 각 목의 항목에 대하여 설계단계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공사 또는 공인시험검사기관이 성능을 인증한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부품에 대한 설계단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 (1) 가스용품의 제조사업자가 그 업소에서 일정형식의 제품을 처음 제조하는 경우
- (2) 가스용품의 수입자가 일정형식의 제품을 처음 수입하는 경우
- (3)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제품 중 성능의 변경을 수반하는 재료 및 구조가 변경된 경우
- (4)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제품으로서 매 5년이 경과한 경우

나. 생산단계검사

- (1) 설계단계검사에 합격된 가스용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균일한 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검사한다.
- (2) 자체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에 따라 구분된 다음의 검사 중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또는 가스용품의 수입자가 선택한 하나의 검사를 실시한다.

종류	대상	구성항목	주기
제품확인검사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외의 품목	정기품질검사	2월에 1회
		상시샘플검사	신청시마다
생산공정검사	제조공정·자체검사공정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	정기품질검사	3월에 1회
		공정확인심사	3월에 1회
		수시품질검사	1년에 2회 이상
종합공정검사	공정 전체(설계·제조·자체검사)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	6월에 1회
		수시품질검사	1년에 1회 이상

- (3)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구분		판정기준	적용여부	
			생산 공정 검사	종합 공정 검사
일 반 사 항	조 직	적정한 기술적·업무적 능력이 있는 조직 확보	○	○
		잠재적인 고장원인을 제품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연구 또는 개발조직 보유		○
	품질시스템	적정한 품질시스템 운영 및 운영성과 검토	○	○
	문 서 관 리	적정한 문서관리시스템 유지	○	○
	인 적 자 원	품질에 영향을 주는 직원 적격성 유지관리	○	○
	시 설·장 비	제품의 요구사항 및 품질관리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확보	○	○
설 계	설 계·개 발	제품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설계 및 개발시스템 확보		○
		잠재적 고장영향분석, 신뢰성 평가 등을 통한 제품설계 증명 및 출력물 제공결과		○
		설계·개발의 타당성 확인 및 변경 절차 운영		○
제 조	구 매	구매품에 대한 적정한 관리체계 유지	○	○
		공급자 평가의 구매정책 반영		○
	생 산	제품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생산공정 보유 및 실행 증명	○	○
		공정승인합격판정기준 보유	○	○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공정관리능력 증명		○
		관리계획서 및 작업지침서 운영		○
		예방 및 예측 보전, 생산치공구 관리시스템 운영		○
		자재와 제품의 취급 및 보관시스템 운영	○	○
자 체 검 사	검 사 방 법 및 절 차	제품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사방법 및 절차 유지	○	○
		계수값 데이터 샘플링에 대한 합격수준은 무결점 수준유지		○
		측정장치 결정 및 유효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한 소급성 유지, 기록관리 등의 절차 유지	○	○

		측정시스템 분석 수행		○
		설계단계검사의 전체 항목에 대한 자체검사 (1회/년) 실행	○	
		설계단계검사의 전체 항목에 대한 자체검사 (2회/년) 실행		○
		검사기관의 운영요건(ISO 17020)에 준하는 시스템의 운영		○
	시 정 및 예 방 조 치	부적합 사항 관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운영	○	○
	내 부 감 사	시스템에 대한 적정성 유지능력의 보유	○	○
의 무	합 격 표 시	합격표시에 대한 문서화된 관리규정 유지	○	○
		합격표시 제작에 관해 별도로 문서화된 규정 유지		○
	교 육	품질관리시스템 교육이수	○	○
	안 전 관 리	제품불량사고 및 부적합제품 유통 방지	○	○
	기 타	그 밖의 안전유지에 관한 사항	○	○

다. 가스용품에 대한 특례

가스용품이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기술개발에 따른 새로운 가스용품으로서 안전관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불구하고 검사에 합격시킬 수 있다.

2. 검사방법 등

검사방법, 가스용품별 검사항목, 검사단위, 시료 채취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